



제429회국회(정기회)
제 9 차 교 육 위 원 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가의 도박 중독 예방 시책 마련
의무 규정 신설 등 〉

■ 김준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784호)

2025. 11.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 목 차 】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국가의 도박 중독 예방 시책 수립·시행 등	2
[참고자료]	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준혁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5. 9. 8.

3. 회부연월일 : 2025. 9.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교육, 기후변화환경교육, 진로교육, 학교체육 및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등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육의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통해 온라인 도박을 접하게 되면서 청소년의 도박 중독이 심화되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폭행 및 청소년 간 고금리 사채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는 등 청소년 시기의 도박문제는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청소년의 도박 중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학교의 장은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에 관한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박 중독을 방지함과 아울러 학생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Ⅲ. 검토의견

1. 국가의 도박 중독 예방 시책 수립·시행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학교의 장은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22조의6(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 예방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u>② 학교의 장은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u>

나. 검토의견

-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통하여 온라인 도박을 접하게 됨으로써

청소년의 도박 중독이 심화되는 사회 현상 발생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가 도박 중독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학교에서는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도박 및 도박 관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정신 건강을 유지·발전하도록 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17개의 시·도교육청에서 현재 도박 예방교육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¹⁾ (참고자료 1, 2 참조), 「학교보건법」 규정에 따라²⁾ 실시하는 보건교육에 도박 중독의 예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의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소관업무 중에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이 있다는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³⁾.

□ 또한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학교가 예외없이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

1) 동 개정안의 대표발의 의원인 김준혁 의원실의 2025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 범죄가 2022년 76명에서 2024년 631명으로 8.3배 늘어나는 등 청소년 도박 문제가 상당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도박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음. 서울 및 수도권의 학교는 학생들에게 도박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의원실에 보고하였지만 이는 형식적인 1시간짜리 영상 교육으로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았음

2)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9.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이하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사항

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도박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아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학교의 범위를 법률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일부수정

- 학생들에게 도박 중독의 위험성을 인식시키고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한다는 측면에서 개정 취지에 공감함.
- 「학교보건법」에서 도박 중독의 예방 등을 위한 보건교육을 학교의 장이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 제22조의6제2항에서 교육부장관이 기본 방향을 정하되, 시도교육감이 이를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를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수정할 필요.

○ 대구시교육청: 신중검토

- 개정안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의4(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⁴⁾와 중복되며, 지자체의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에 의해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일부수정

- 청소년의 경우 도박은 그 자체가 범죄이므로 ‘도박 중독 예방교육’이 아닌 ‘도박 예방교육’으로 수정이 필요하며⁵⁾, 주무기관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음.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의4(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① 위원회는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정작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는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문 의 처
02)6788-5187

사감위의 의견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각주 3번 참조)

참고 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의 학생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고 도박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학생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5년마다 학생의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학생 도박 폐해 방지 및 완화에 관한 사항
3.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생 도박의 예방·상담·치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 근거 및 목적

- (법적 근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 18.1.4.)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22.6.29.시행)

- 학생 도박 예방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등의 제시를 통한 학생 도박 예방의 토대 마련
- 체계적·선제적 도박 예방 교육 실시로 도박 문제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 학생을 도박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학생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2. 용어 및 개념

- (도박)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
- (학생)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재학 중인 사람
- (학생 도박) 학생들이 게임이나 놀이의 결과에 돈 또는 돈이 될 만한 물건을 거는 행동과 성인용 도박(불법 포함)에 불법적으로 참여하는 행동
 - ※ 우리나라는 성인의 경우 7대 사행산업(경마,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 복권, 카지노, 소싸움)은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모든 도박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청소년이 도박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도박 문제, 중독) 도박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대인관계 갈등, 재정적·사회적·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로 도박행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